

「구미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7월 15일

나. 발 의 자: 이정희, 김원섭, 김재우, 김정도, 김춘남,
추은희 의원(6인)

다. 회부일자: 2024년 7월 16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7월 24일

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이 정 희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이용률이 저조한 시간대에 비어있는 종교시설 등 건축물 부설 및 야외주차장을 주차장소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공유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2조)
-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4조)
- 공유주차장 지정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공유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-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과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0조)
- 주차공유 사업의 운영 현황 공개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주차장법」 제19조
 -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11조의2
 -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8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조례안은

- 공유주차장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여 구미시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공유주차장 지정 충족 요건, 보조금 지원 및 관리·운영, 주차 공유 활성화 사업 등 주차 공유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주차 공간의 효율적 사용으로 주차난 해소와 주차 공유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공유주차장의 신청 및 선정,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집행부서의 구체적인 지침 및 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, 주차공간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공유주차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공유주차장 현황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 주차 이용시간 미준수, 주차장 소유주 권리와 책임 범위 모호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예방을 위해 이용자와 주차장 소유자들에 대한 사업의 철저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, 주차공유 관련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

- 학교 등의 공공기관은 공유주차장 지정을 위해 노력하되,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가 필요함.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